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4가단5179725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피고1. A

2. B

변론 종결2015. 5. 15.

판결 선고2015. 6. 5.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50,288,660원 및 그 중 49,991,943원에 대하여 2014. 3. 19.부터 2014. 8. 28.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에 2014. 1. 10.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와 2014. 2. 5. 접수 제35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2008. 12. 19. 피고 A와 피고 A가 소외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5,000만 원에 관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기업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 피고 A는 2014. 2. 20.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4. 3. 19.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기업은행에게 50,359,063원을 대위변제한 후 367,120원을 회수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대위변제금 잔액은 49,991,943원(= 50,359,063원 - 367,120원)이고, 그 외에 대위변제금 일부의 회수일까지의 산정된 확정지연손해금은 120원이며, 원고가 피고 A를 대신하여 지급한 법적 절차비용 등 대지급금은 296,597원이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 피고 A는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와 2014. 2. 5. 접수 제3563호로 2014. 1. 10.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구상금 50,288,660원(= 대위변제금 잔액 49,991,943원 + 확정지연손해금 120원 + 대지급금 296,597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49,991,943원에 대하여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2014. 3.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이 피고 A에게 송달된 2014. 8. 28.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인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피고 A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불과 2개월이 지나지 않은 2014. 2. 20.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며, 원고가 2014. 3. 19. 피고 A의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위 구상금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A의 채무초과상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A는 아래와 같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어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

(1) 적극재산

이 사건 부동산	312,015,000	감정인 C의 감정평가결과
충북 음성군 D 전 1319㎡의 3/8 지분	23,247,375	감정인 E의 감정평가결과
합계	335,262,375	

(2) 소극재산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원고의 신용보증)	50,000,000	갑 제8호증, 성남낙원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부터의 사실조회회신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 성남낙원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	100,000,000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10,000,000	
국민카드 신용카드대출금	5,055,000	
하나카드 신용카드대출금	2,375,000	
삼성카드 신용카드대출금	7,500,000	
롯데카드 신용카드대출금	3,957,000	
국민카드 현금서비스	2,200,000	
삼성카드 현금서비스	1,620,000	
보증금반환채무	185,000,000	
합계	367,707,000	갑 제7호증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피고 A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로해 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의 무자력 상태를 심화시켜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A의 사해의사 및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

라. 피고 B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선의의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의 주장 및 그에 부합하는 피고 A 대리인의 진술만으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악의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 B의 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피고 A는 피고 B으로부터 의류를 공급받던 관계에 있었고 피고 B에게 1,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를 제의하여 부동산중개인의 중개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갑 제7호증) 및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2억 9,000만 원으로 하되,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 성남낙원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 1억 원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 합계 1억 8,500만 원 총 합계 2억 8,500만 원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고 차액 500만 원(= 2억 9,000만 원 - 2억 8,500만 원)은 종전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피고 A를 대신하여 반환하여 주었다는 것인데, 2014. 2. 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피고 B에게 이전된 이후 현재까지도 성남낙원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한 채무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과 피고 B과의 임대차계약서도 새로이 작성되지 않은 상태이다.

○ 피고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이 급매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마. 소결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은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평균

별지